

## [2023학년도 후기 졸업]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계획 안내

### 1. 관련 근거

- 「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」 제126조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

### 2. 추진 목적

-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학사학위 취득대상이나, 개인사정 등으로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사학위 취득유예 제도 시행

### 3. 세부 추진계획

- 신청기간: 2024. 7. 10.(수) ~ 7. 12.(금)
-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: 1개 학기(단, 1회에 한하여 신청 시 연장가능)
- 신청대상: 2024년 8월 졸업대상자로 **졸업요건을 모두 충족**하였으나, 학사학위 취득유예(졸업연기)를 희망하는 학생
- 신청자격: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
  - ① 2024년 8월 졸업예정 대상자
  - ② 정규학기 8학기 이상 등록한 자(건축학전공 10학기, 편입생 4학기 이상)
  - ③ 아래의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
    - 공통사항: 학과(트랙)별 졸업 요구학점 이수  
(편입생 중 선이수 과목이 있는 학생은 선이수과목 반드시 이수)
    - 공학계열, 지역과학계열, 예·체능계열: **130학점** 이상  
(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64학점 이상 단, 2016학번 이전은 170학점 이상)
    - 인문·사회계열: **120학점** 이상
  - ④ 학점 외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: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인증 합격자
- 신청방법: 신청자(학생) 온라인 직접신청

(신청자) 학사시스템 온라인 신청 ⇒ (학사지원팀)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⇒ (전공) 졸업사정 결과확인

- 학사시스템(<https://info.hknu.ac.kr>)  
: 학부 → 졸업 → 졸업예정자관리 → “**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**”
- 신청방법: 세부사항 “붙임1 참고”

○ 학사학위 취득유예 등록금 조건표

수강 학점	납입 금액
미 신청, 현장실습 교과목만 수강	금100,000원
1학점 ~ 3학점	해당학기 등록금의 1/6 해당액
4학점 ~ 6학점	해당학기 등록금의 1/3 해당액
7학점 ~ 9학점	해당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
10학점 이상	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

○ 기타 유의사항

-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 별도의 휴학신청 불가
-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
- 재수강을 목적으로 인한 유예신청은 지양바람

4. 향후 일정

내용	기간	세부 내용
유예신청	'24. 7. 10.(수) ~ 7. 12.(금)	학사시스템 신청(학생본인)
수강신청	'24. 7. 31.(수) ~ 8. 2.(금)	학사시스템 신청(학생본인)
등록금납부*	'24. 8. 6.(화) ~ 8. 7.(수)	학사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(또는 카드납부)

- 붙임 1.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매뉴얼(학생용) 1부.  
 2.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현황 61명(PW: 5035) 1부. 끝.